

써 협상의 Leverage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. 또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300억원 내에서 1,000억원 이내로 확대하였으며, 과도한

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(아래표 참조)

제 도 개 선 과 제	추 진 사 유
●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절차 개선 ○ 사업지정에 앞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의무화 (기본계획) ○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절차 보완 (시행령) - 기본설계를 포함 제출, 주무관청 사전검토 절차 추가 - 제안서 내용 보호규정 신설 ○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를 부여 기준 등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발 (PICKO) ● 재정지원의 절차 및 기준 명확화 ○ 재정지원 기준·절차·방법, 협약 당사자간 위험분담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표준협약(안) 개발 (PICKO) ○ 지자체 민자사업 재원분담원칙 정립(기본계획) ○ 환차손 보전 근거 명시 (시행령) ● 협상과정의 경쟁성 및 투명성 제고 ○ 협상대상자는 복수를 원칙 (시행령) ○ 주무관청의 협상시한 제시 허용 (기본계획) ○ 사업자 모집 시 기본설계·타당성조사 자료 등을 포함 고시(기본계획) 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300→1,000억원 인상(시행령)	· 경제성·재무성 분석의 내실화 · 민간제안사업의 절차를 정부고시 사업에 준하여 보완 및 제안서 검토를 내실화 ·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유지 ·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 ·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· 환리스크 정부보전 명시 ·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 · 협상의 효율성 제고 · 다양한 투자정보 제공 ·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한도 현실화